

『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허 훈입니다.

-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2호
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지난해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차원의
법률 개정 움직임에 앞서 시민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
정당현수막을 일부 규제하는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
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
발의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.

- 그러나 지난 1월 12일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8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 개정,
정당현수막의 설치 조건과 설치 개수 등이 규정되었습니다.

- 이에 현행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법률에 맞게 개정함으로써
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억제, 시민 안전 확보 및 불편 최소화,
옥외광고물 등의 집행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동시에 엄정한
법집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
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
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